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02. 25.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국립소방병원 이사회에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 3급 이상 공무원 등 정부관계자인 당연직 이사 5명을 두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병원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점, 유사한 국립병원에 대한 현행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직 이사의 수를 전체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조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당연직 이사에서 행정안전부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삭제함(안 제 6조제3항제2호).

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함(안 부칙 제 1호).

다. 당연직 이사는 ‘직’을 중심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소방청 차장·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

북도 행정부지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이사로 보도록 하고, 당
연직 이사 외의 이사에게는 행정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남은 임기
가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을 “기획재정부 및”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직이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소방청 차장·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로 본다.

제3조(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이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u>정안전부 및 보</u>	-----
	<u>건복지부 소속 3</u>	-----
	<u>급 공무원 또는</u>	-----
	<u>고위공무원단에</u>	-----
	<u>속하는 일반직공</u>	-----
	<u>무원 중 소속 기</u>	-----
	<u>관의 장이 지명</u>	-----
	<u>하는 사람 각 1</u>	--
	<u>명</u>	
<u><신 설></u>	3. 충청북도 행정부	3. (개정안과 같음)
	<u>지사</u>	
<u>④ 원장 및 이사의</u>	<u>④ 원장 및 당연직</u>	<u>④ (개정안과 같</u>
<u>임기는 3년으로 하</u>	<u>이사 외의 이사의</u>	<u>음)</u>
<u>며, 한 차례만 연임</u>	<u>임기는 3년으로 하</u>	
<u>할 수 있다.</u>	<u>며, 한 차례만 연임</u>	
	<u>할 수 있다.</u>	
<u>⑤ · ⑥ (생 략)</u>	<u>⑤ · ⑥ (현행과</u>	<u>⑤ · ⑥ (개정안과</u>
	<u>같음)</u>	<u>같음)</u>
<u>⑦ 원장·이사 및 감</u>	<u>⑦ 원장, 당연직 이</u>	<u>⑦ (개정안과 같</u>
<u>사가 임기 중 궐위</u>	<u>사 외의 이사 및</u>	<u>음)</u>
<u>된 경우 새로 임명</u>	<u>감사가 임기 중 궐</u>	
<u>되는 원장·이사 및</u>	<u>위된 경우 새로 임</u>	
<u>감사의 임기는 새</u>	<u>명되는 원장, 당연</u>	
<u>로 시작한다.</u>	<u>직 이사 외의 이사</u>	
	<u>및 감사의 임기는</u>	
	<u>새로 시작한다.</u>	

	부 칙 <u>이 법은 202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u>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당연직이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소방청 차장·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로 본다.</u> <u>제3조(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이사의 임기는 종전 임</u>
--	--	--

		<u>기의 남은 기간으로</u> <u>한다.</u>
--	--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718
----------	------

제출연월일 : 2024. 7. 12.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므로
당연직 이사에서 행정안전부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삭제함(안
제6조제3항제2호).

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함(안 부칙
제1호).

다. 당연직 이사는 ‘직’을 중심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
지를 살리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된 이사 중 소방청 차장·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이사로 보도록
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에게는 행정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남은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
조).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원장·이사 및”을 “원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사의”를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원장·이사”를 각각 “원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로 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청 차장

2.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직이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소방청 차장·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로 본다.

제3조(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이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원) ① (생략)	제6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원장·이사</u> 및 감사는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 장이 임명한다.	② <u>원장</u> 및----- ----- -----.
③ <u>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 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 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 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③ <u>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 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 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 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u>소방청 차장</u>
	2. <u>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 하는 사람 각 1명</u>
	3. <u>충청북도 행정부지사</u>
④ <u>원장 및 이사의</u> 임기는 3년 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④ ----- <u>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의</u> -----

수 있다. ⑤ · ⑥ (생략) ⑦ <u>원장·이사</u>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u>원장·이사</u>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u>원장, 당연직 이사 외의 이</u> <u>사</u>----- ----- <u>원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u>-- ----- -----.
--	--